수원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

□ 제정 : 2004.	3. 2.	□ 개정 : 2020.	3. 13.
□ 개정 : 2015.	5. 13.	□ 개정 : 2021.	2. 26.
□ 개정 : 2017.	8. 31.	□ 개정 : 2022.	6. 1.
□ 개정 : 2019.	6. 18.		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본교 정관과 수원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(이하 "산학협력단"이라 한다) 정관의 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(이하 "법"이라 한다)에 의거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창출·공유·확산을 위한 산·학·연 간의 다양한 협력과 교류를 통한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업)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- 1.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
- 2.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
- 3.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
- 4.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
- 5.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
- 6. 산학협력수요 및 활동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·제공 및 홍보
- 7. 산학협력사업 및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·훈련
- 8. 대학안에 설치·운영되는 각종 산학협력관련기관이나 사업에 대한 지원
- 9.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 수탁업무 및 보육사업 등, 지역사회와 연계사업
- 10. 교원 창업에 대한 지원 <개정 : 2021. 2. 26.>
- 11. 기타 법령과 대학의 규정이 정하는 사항 및 위의 각 호에 부수 되는 사항

제 2 장 조 직

제4조(조직) 본교 산학협력단 조직은 다음과 같다

- 1. 재정지원 사업팀.
- 2. 연구지원 사업팀.
- 3. 행정지원 팀.
- 4.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. 〈신규 : 2021. 2. 26.〉
- 5. 기업신속대응센터. <신규 : 2021. 2. 26.>
- 6. AI기반케어로봇센터. <신규 : 2021. 2. 26.>
- 7. 삭제
- 8. 기타 산학협력단에서 필요로 하는 조직.

제5조(재정지원사업팀) 재정지원 사업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.

- 1. 산학협력사업 및 국책사업의 총괄·조정
- 2. 산학협력다 관려 재정사업 실적성과의 평가
- 3. 운영위원회 및 산학협력관련 협의회 운영
- 4. 국책 및 특성화사업 유치 및 추진 관리
- 5.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
- 6.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

제6조(연구지원사업팀) 연구지원 사업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.

- 1. 연구계획 수립 및 연구인력 관리
- 2. 연구비 관련 업무, 연구기금 및 연구비조성 관리
- 3. 연구업적평가 및 연구 활동 지원업무

제7조(행정지원팀) 행정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하다.

- 1. 산학협력사업과 관려된 회계의 관리
- 2. 대학의 시설 및 운영지원
- 3. 산학협력시업 및 활동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·제공 및 홍보
- 4. 산학협력단사업 및 관련 담당자 교육훈련
- 5. 대학내 설치 운영되는 각종 산학협력 관련기관 및 사업 지원
- 6. 기타 단내 서무에 관한 사항

제8조(센터 및 연구소)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, 기업신속대응센터, AI기반케어로봇센터 업무분장은 따로 정한다.<신규 : 2021. 2. 26.>

제 3 장 보상금

제9조(보상금의 지급) ① 제10조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기준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.

제 4 장 재산 및 회계

제10조(회계년도)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. 제11조(수입) 다음 각호의 수입은 산학협력단의 수입으로 한다.

- 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
- 2. 산학협력계약에 의한 수입금
- 3. 산학협력 성과에 의한 수익금
- 4. 산학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
- 5. 학교기업의 운영 수익금
- 6. 법에 의한 직업훈련교육과정 또는 계약 학과・학부의 설치・운영에 따른 납부금 등의 수입
- 7. 다른 기관이나 산업체 등이 활용하는 산학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, 실험·실습시설 및 장비 등의 사용료
- 8. 기타 산학협력사업에 의한 수익금

제12조(지출) 산학협력다은 다음 각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.

- 1. 산학협력단의 관리:운영비
- 2. 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
- 3.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
- 4. 대학의 시설·운영비 지원
- 5. 학교기업의 운영비
- 6. 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지원비
- 7.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
- 8.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
- 9. 기타 산학협력에 필요한 경비

제13조(회계관리) ① 산학협력단의 소관에 속하는 모든 수입 및 지출은 이를 산학협력단의 회계에

8-0-1 산학협력단 운영규정

계상한다.

② 회계는 산학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 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.

제14조(회계기관) ① 다장은 산학협력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.

- ② 단장은 수입징수 또는 지출명령에 관한 사무를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그 업무 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.
- ③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수입원 및 지출원을 둔다. 다만, 총장과 협의하여 대학 회계담당 부서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.
- ④ 수입 및 지출의 집행기관을 산학협력단에 둘 경우에는 사업규모에 따라 수입원 및 지출원을 동일 이으로 할 수 있다.
- 제15조(지출방법) ①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이 행한다.
 - ② 지출은 금융기관의 계좌이체에 의하여야 한다. 다만, 업무추진비, 여비 등 계좌이체로 지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소액의 지출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지출 할 수 있다.
- 제16조(회계처리 등) ①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한다.
 - ② 산학협력다은 재무상태표 운영계산서 및 현금호름표 등의 재무제표를 작성한다.
-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작성에 관하여는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 따른다.

제 5 장 운영위원회

- 제17조(구성) ① 운영위원회(이하"위원회"라 한다)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
 - ②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며, 회의를 총괄한다.
 - ③ 위원은 교직원 중 에서 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 단,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-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산학협력단 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.
-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- 제18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산학협력 사업 및 국책사업의 수행 운영
 - 2. 산학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- 3. 산학협력단 정관 및 운영규정의 개·폐에 관한 사항

- 4. 교외연구비, 연구간접경비 및 학술연구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5. 기타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

제19조(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)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 6 장 보 칙

제20조(비밀유지의무) 산학협력단 업무에 종사한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 이 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4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(시행일)이 규정은 2017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이 규정은 2019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이 개정 규정은 202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이 개정 규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이 개정 규정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